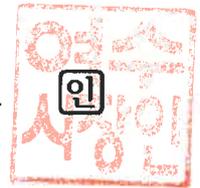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서
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827호

붙임 여수시 도서지역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7호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목욕업소”를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한다.

제7조 중 “목욕업소와 목욕권”을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목욕권 및 이·미용권”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목욕권 사용)”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

단, 목욕업소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미용업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욕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미용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목욕업소”를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목욕권”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u>	<u>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u>
제3조(지원 대상 등) ①·② (생략)	제3조(지원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목욕 등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u>목욕업소의 무료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u>	3. ----- ----- ----- ----- <u>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u> -----
제7조(협약 체결) 시장은 시 <u>목욕업소와 목욕권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u>	제7조(협약 체결) ----- <u>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목욕권 및 이·미용권</u> -----
제8조(목욕권 사용) <u>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u>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u>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u> <u>단, 목욕업소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미용업소</u>

현행	개정안
<p>제9조(요금 정산) ①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에 대한 요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u>목욕업소</u>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비 청구서에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다)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u>목욕권</u>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2. (생략)</p>	<p><u>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욕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u></p> <p>제9조(요금 정산) ① ----- ----- - <u>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환수 조치 등) ----- ----- ----- -----.</p> <p>1. ----- <u>목욕권 및 이·미용권</u>-----</p> <p>2. (현행과 같음)</p>